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3-89 |
|----------|-------|

제출년월일 : 2023. 5.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 나. 민원실의 설치 등 (안 제4조)
-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 (안 제5조)
-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 (안 제6조)
- 마.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안 제7조)
- 바. 민원상담관의 위촉 (안 제8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3. 3. 30. ~ 4. 19.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2023.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3.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 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이지현 |
| 연 락 처 | 02-3153-8453 |